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2
----------	-------

발의연월일 : 2026. 7. 28.

발 의 자 : 김병주 · 진성준 · 김성희
박용갑 · 이언주 · 유용원
허성무 · 이정현 · 한준호
윤종균 · 강준현 · 민병덕
박 정 · 이상식 · 허 영
의원(15인)

제안이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만, 민간항공기가 일부 군용비행장을 포함한 국방부장관 관할 공역을 사용함에 따라 군 항공교통관제사가 민간항공기에 대해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최근 민간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서도 민간항공기 관제 지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사 양성을 위해 군 전문항공교통관제

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민간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증명 체계를 갖추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또한, 군 비행기·회전익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전역 후 군에서의 비행시간을 인정받아 민간항공기를 조종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는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이 식별되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군 비행기·회전익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국방부장관 자격부여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안전법」 조항을 용어 정의에 추가함(안 제2조제5항 및 제6항).

나.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과 해당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군용항공기 중 비행기·회전익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조종사 자격을 부여받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의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교통관제사”란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전문항공교통관제사”란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의2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항공교통관제업무”를 “항공교통관제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항공교통관제업무”를 “항공교통관제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과 해당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군 조종사 자격부여 등) 군용항공기 중 비행기·회전익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조종사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교통관제사로서의”는 “항공교통관제사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교통관제업무”를 “항공교통관제 업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항공교통관제업무”를 “항공교통관제 업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항공교통관제업무”를 “항공교통관제 업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항공교통관제사”란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전문항공교통관제사”란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의2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①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종사하는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① ----- <u>항</u> <u>공교통관제 업무</u> ----- ----- ----- ----- ----- ----- ----- ----- ----- ----- -----

군인 또는 군무원은 그러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과 해당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항공교통관제 업무-----

-----.

④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 2. (생략)

⑤ (생략)

<신설>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⑥ -----

-----제5항에-----

-----.

1. ~ 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군 조종사 자격부여 등)
군용항공기 중 비행기·회전익
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
부장관으로부터 군 조종사 자
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
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1의2. ----제7항----- ----- -----
2. 군 <u>항공교통관제사</u> 로서의 직 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중대한 과 실이 있는 경우	2. -- <u>항공교통관제사의</u> ----- ----- ----- -----
3. 질병,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u>항공교통관제업무</u> 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국 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3. ----- ----- <u>항공교통관제 업무</u> ----- ----- -----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군용비행장에서 두 나라 이상 의 영공을 운항하는 민간항공 기에 대한 <u>항공교통관제업무</u> 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 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항 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 ----- ----- <u>항공교통관제 업무</u> ----- ----- ----- ----- -----.
제16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 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 하고 <u>항공교통관제업무</u> 에 종사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벌칙) ① ----- ----- ----- <u>항공교통관제 업무</u> ----- ----- -----.